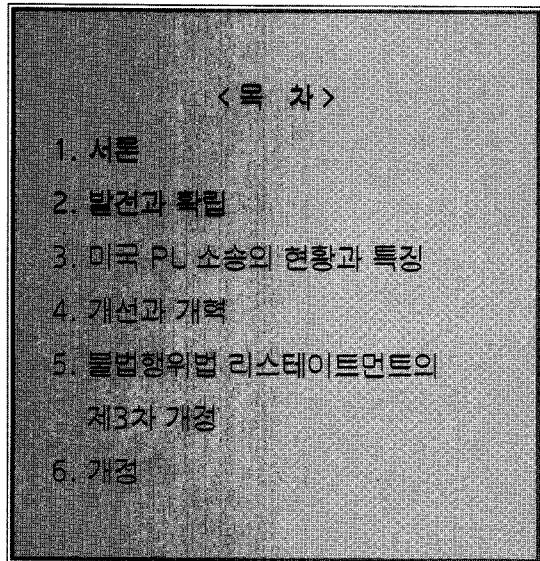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동향 (I)

공동집필 · 김기령 변리사 킹로드특허법률사무소
나경수 이사 ESAK



1. 서론

우리나라는 성문법국가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근거가 없는 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법관이 법(Common Law)을 형성하는 이른바 판례법에 근거한 불문법 국가인 미국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새로운 법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를 입으면 누군가로부터 배상을

필히 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미국인은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컴퓨터작업으로 어깨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도 컴퓨터제조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USA Today 1992년 6월 15일자에 의하면 뉴욕지방법원에 IBM, Apple, AT&T사 등을 피고로 하는 44건의 반복적 스트레스로 인한 상해(RSI)사건을 병합심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미국의 재판제도는 많은 특징이 있고, 그 책임추궁도 엄격하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미국에서의 제조물책임 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여러 측면에서 준비해야 한다.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은 연방제도와 주제도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은 그 역사를 알 수 있듯이 우선 주정부가 형성되고, 그들 주의 합의에 의해 합중국정부(연방정부)가 형성되었다. 각각의 주(주정부)와 연방(연방정부)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는 연방헌법이(The Constituti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 정하고 있다.

주와 연방의 기본적인 틀로서 연방의 권한은

연방헌법에 의해 연방의 권한으로서 인정된 국방, 외교, 주간의 거래, 연방차원의 과세, 화폐의 주조, 우편, 이민등의 권한에 한정된다.

그 이상은 민상법, 형법, 회사법 등의 기본법을 포함하여 모두 각각의 주에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다. 각각의 주는 독립된 재판관할권(Jurisdiction)을 가지며, 따라서 미국에서는 51개의 재판관할 지역(50개 주와 연방)이 존재하게 된다.

제조물책임도 각각의 주법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미국에서는 50개주가 각각 다른 제조물책임법을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 된다. 물론 그것은 독일과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가 아니므로 의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이 아닌 법원에서 판결한 판례법이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리는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발전되었으며, 연혁적으로는 과실책임, 보증책임, 엄격책임 즉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로 전개되어 발전되어 왔다.

엄격책임이론은 1963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채택한 이후, 1965년에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가 발행한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ort, Second) 제402조 A, 제402조 B를 제정하여 엄격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70년대에 각 주에서 채택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 : ALI)는 1923년 2월 23일에 수도 워싱턴에서 법관,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중에 저명한 인사로

구성되어 카네기재단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학회이다. 그 목적은 [법의 명확화와 간단화 및 사회적 요청에 대한 법의 보다 좋은 적응을 촉진하고 보다 좋은 사법을 확보하며, 학문적이며 과학적인 법적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다. 주된 사업은 미국법의 여러 부문에 대한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를 편찬발행하는데 있지만 그 외에 형사소송 및 증거법에 대한 모범법안(model code)을 제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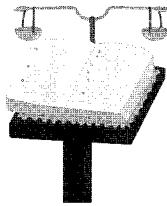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는 그 자체가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미국 판례법의 2대 결함인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주관하에 판례법상의 일반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부차적인 법원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 규정은 판례나 입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후의 많은 판결에서도 이 규정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2. 발전과 확립

1) 과실책임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산업의 육성이 요청되고 소비자보호는 경시되어 제조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다. 요컨대 초기단계에서는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加害者와의 사이에 계약당사자관계(Privity)가 필요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추궁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총포나 극약 등



본래적으로 위험한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 관계의 필요성이 완화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불법행위일반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관계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이 되면서는 일정한 경우에 과실이 추정되어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2) 보증책임론

한편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종래부터 피해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서 제조업자에게 보증책임(Warranty)을 물을 수 있었다.

보증책임은 상품의 매매계약에 수반하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계약위반을 추급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무과실이라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증책임은 명시적 보증책임(Express Warranty)과 묵시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y)으로 나뉜다.

명시적 보증책임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제품판매시에 보여준 견본이나 약속대로 성능, 품질, 안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의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이 도달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은 명시적 보증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한다.

묵시적 보증책임은 제품이 판매될 때에 침묵 속에서도 당연히 이해되었던 일정한 품질과 안전성을 구매한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후 판례는 보증책임에 있어서도 계약당사자관계의 존재는 보증책임의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보증책임론은 제조업자의 계약당

사자관계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관한 보증을 이유로 직접의 매수자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소비자보호라는 입장에서 보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묵시적 보증책임론의 영향은 각주에 급속히 파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Restatement of Tort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제402조 A의 개정안을 세 번이나 수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증책임에서도 피해자의 보증에 대한 신뢰, 결함발견후의 소정기간내의 통지의무, 면책약관에 의한 면책의 가능성 등 그 법률구성에 여전히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3) 엄격책임론의 등장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제조물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 즉 엄격책임으로 인정되게 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이며 불과 35여년 전이다. 근래의 고도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유통구조의 복잡성은 이를 전통적인 책임원칙에 의거한 피해자구제를 곤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제조물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에 무력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량 생산과 대량소비에 의하여 이윤을 얻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새로운 책임유형으로서 엄격책임을 기초로 한 제조물책임원칙이 확립되게 되었다.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와 제402조 B에 의하면 엄격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원인이 된 제조물이 결합



상태에 있고 또한 불합리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제품에 의하여 야기된 이용자, 소비자 또는 그로부터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는 과실없이 지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n Tort)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제조업자측에 "엄격"(Strict)하고, 보증책임에서와 같은 계약 혹은 보증부존재의 항변 예컨대, 직접적 계약당사자관계의 결여, 피고에 대한 통지의 결여, 보증에 대한 신뢰의 결여, 묵시적 보증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법행위적"(In Tort)이다.

이 이론의 요건은,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것이 판매자의 범위를 떠난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점(결함의 존재) 및 그 결함이 원인이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인과관계의 존재)를 피해자가 입증한 경우 제품을 제조 혹은 판매한 자는 그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한편 엄격책임을 판매업자 포함하여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①제조업자 등은 고도의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에 의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위에 있다.

②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제조하여 판매에 의해 이윤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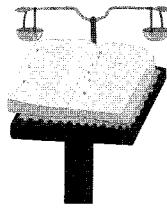
③제조업자 등은 결합제품으로부터 생긴 손실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널리 소비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④손실을 제조업자 등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스스로 보다 안전한 제품의 제조 혹은 판매에 노력할 기울일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 기대될 수 있다.

이 엄격책임론을 판례상 확립한 대표적인 사건은 1963년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내린 이른바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이다. 이 그린맨(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은 원고가 자기부인이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선물한 목공선반으로 사용되는 조립동력기계(제품명 : Shopsmith)를 사용하던 중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나무 파편이 튀어나와 눈을 다쳐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매상 및 제조회사를 상대로 과실 및 보증위반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또한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한 것임을 보여주는 실체적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은 소매상에 대한 책임은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조회사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서 트라이너(Traynor)판사는 『제조업자가 그의 제품이 점검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유통시켜 그것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제조업자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결합제품사고의 피해자보호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제조물책임에 대한 엄격책임이론의 적용



은 다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급속도로 채택되었다.

이 판결의 영향으로 제조물책임이론에서 보증책임이론은 막을 내리게 되고 마침내 제조물책임은 적어도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이라는 판례법상의 원칙을 확립하게 되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이 판결을 따르게 되고, 1965년에 제조물책임에 대한 염격책임이론이 제2차 불법행위리스테이트먼트의 402조 A 및 402조 B에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1)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 : 이용자나 소비자의 유형적 손해에 대한 제품매도인의 특별책임

(가) 이용자나 소비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한 결함상태에 있는 모든 제품 (Product in a defect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을 판매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이용자나 소비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유형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a) 매도인이 당해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것

(b) 제품이 판매된 당시의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변경이 가해지지 않은 채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도달되어 있을 것.

(나)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a) 매도인이 문제된 제품의 준비와 판매를 함

에 있어서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인 경우 및

(b) 이용자 또는 소비자가 직접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품을 매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매도인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2)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B : 동산매도인의 소비자에 대한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by Seller of Chattels to Consumer)

동산(Chattels)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광고나 라벨,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대중에게 자기가 판매한 동산의 성질이나 품질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를 한 경우에는 그 부실표시에 대한 정당한 신뢰(Justifiable reliance)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유형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a) 부실표시가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며,

(b) 소비자가 문제된 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지 않았거나 매도인과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리스테이트먼트 제402조 A와 제402조 B에 의한 염격책임론은 Massachusetts, Michigan, North Carolina, Virginia 4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채택됨으로써 현재 제조물책임법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네 개 주도 염격책임은 채용하고 있지 않지만 과실책임 보증책임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는 염격책임과 마찬가지로 운용하고 있다.